

예산총칙

201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55,098,427	25,652,953
일반회계	677,749,546	20,332,486
특별회계	177,348,881	5,320,466
공기업특별회계	38,433,991	1,153,02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65,614	295,9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568,377	857,051
기타특별회계	138,914,890	4,167,44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420,120	1,002,604
주택사업특별회계	2,981,714	89,45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818,388	114,5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56,906	31,707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94,029	2,821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873,204	116,196
교통사업특별회계	6,150,013	184,5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7,520,516	2,625,61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과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367,27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